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62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임이자·강선영·조배숙

최보윤 · 송언석 · 김태호

김성원 · 김위상 · 이상휘
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,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'일본도 살인 사건'으로 인하여 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 환자에 의한 도검·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 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).

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, 형의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·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13조 및 제16조 등).

법률 제 호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 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제3호의2"로, "5년"을 각각 "10년"으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.

3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

- 나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·제2항,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
- 다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

죄

라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마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

제16조의 제목 "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"을 "(총포·도검·석궁 소지 허가의 갱신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 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 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제12조에 따라 도검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"5년마다"를 "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 개 정 아 제12조(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제12조(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지허가) ① 제10조 각 호의 어 지허가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을 소 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-----.<u><단서 삭제></u> 이 경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 우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사 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 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의 소지 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 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 제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 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 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설>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| 제13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소지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소지 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자의 결격사유 등) ①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는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사

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. (생략)

 5.
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

 관한 특례법」
 제2조제1항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. (년 8 가 끝름)
3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나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・제2항,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

 다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

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

 각 호의 죄

라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제8조의 죄

 마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

 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

 항 및 제2항의 죄

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. (생략)

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 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 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 나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 ·제2항, 제260조 및 제26 1조의 죄

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

6의3. ~ 7. (생 략)

② ~ ③ (생 략)

① (생략)

6.	(현행과 길	날음)	
69	의2. <u>제3호</u>	<u> 의2</u>	
-			
_			
	1013		
_	-10 <u>년</u>		
-			
-			
-			10 <u>년</u> -
-			
<u><!--</u--></u>	<u>삭 제></u>		
<	<u>삭 제></u>		

6의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6조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 제16조(총포・도검・석궁 소지허 가의 갱신) 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 (생 략)
 - ⑤ 총포·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: 5년마다. 다만,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.
 - ⑥ (생략)

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・석궁
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
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
갱신하여야 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④</u> 제1항 및 제2항
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⑤
1. (현행과 같음)
2
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
<u>청 전까지</u>

⑥ (현행과 같음)